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56
----------	-------

발의연월일 : 2025. 6. 30.

발 의 자 : 남인순 · 민병덕 · 김기표
김남희 · 박희승 · 박홍배
전진숙 · 김 윤 · 최기상
전종덕 · 백선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으나 27세 이전까지 학업 · 군복무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적용 제외에 해당하고, 27세 이후에 무소득배우자를 제외하고 적용 제외 대상에서 납부 제외 대상으로 전환됨.

그런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비임금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시점 또한 늦춰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2070년에 이르러 국민연금제도가 현재보다 더 성숙하더라도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7.6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질소득대체율은 명목소득대체율의 7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당연적용 제외 규정을 폐지해 누구나 18세에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18세부터 국가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었음을 통지하고, 국민연

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청년들의 보험료 납부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또한 실직·휴직·병역·학업 등의 이유로 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에 대한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입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자동 가입으로 적용 제외가 아닌 납부 예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추후납부 제도 이용 가능성 또한 제고할 수 있음.

이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업 및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18세부터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게 함으로써 청년층의 가입 기간을 늘리고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나목과 다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제9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호 또는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등) ① ----- ----- -.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제92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하고, 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u>나목과 다목</u> 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 제92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가입	19. ----- ----- ----- -----. ----- ----- ----- ----- ----- ----- ----- ----- ----- ----- ----- ----- ----- ----- ----- -----다목 ----- ----- ----- -----

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가. (생 략) 나. <u>18세 이상 27세 미만인</u> <u>기간 중 제9조제3호에 따</u> <u>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u> <u>는 기간</u> 다. (생 략) ② ~ ④ (생 략)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 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 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2. (생 략) 3. <u>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u> <u>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u> <u>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u> <u>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u> <u>자는 제외한다)</u> 4. 5. (생 략)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① (생 략)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u>제3호</u> 또 <u>는 제4호의</u> 경우 소득이 있게	-----.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다.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지역가입자) ----- ----- ----- -----.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5. (현행과 같음)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제3호</u>-----
--	--

된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 3. (생 략) 4. <u>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u> <u>소득이 있게 된 때</u> ③ (생 략)	----- ----- -----.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③ (현행과 같음)
---	---